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35호 2016. 5. 4. (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6 - 40호 개별주택가격 공고	3
거창군 고시 제2016 - 41호 도로명주소 고시	4
거창군 고시 제2016 - 42호 거창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농공단지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5
거창군 고시 제2016 - 43호 거창군계획시설(도로:소로3-95호선 외 1개 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28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 - 489호 거창 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예고	30
--	----

거창군 공고 제2016 - 495호 경남(거창지구)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 44

거창군 공고 제2016 - 496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 46

거창군 공고 제2016 - 499호 2016년 4월중 거창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고 47

회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201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 내역

읍 면	호 수	읍 면	호 수	읍 면	호 수
계	17,456호				
거창읍	5,842	북상면	898	남하면	872
주상면	885	위천면	1,072	신원면	966
응양면	1,018	마리면	1,130	가조면	1,861
고제면	712	남상면	1,317	가북면	883

2. 결정·공시일 : 2016. 4. 29

3.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6. 4. 29 ~ 5. 30.
- 신청사항 : 2016.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자 :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 주택 소재지(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군청 및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에 작성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가격 재조사 및 거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가격을 재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16. 6. 1 ~ 6. 27.
- ※ 문의처 : 군청 재무과(☎ 055-940-3273) 또는 읍·면 사무소

2016. 4. 29

거창군수

거창군 고시 제2016 - 4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4. 29.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1길 77 외 4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농공단지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6-03호(2016.01.13)로 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 05. 04.

거 창 군 수

1. 농공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 없음)

- 국내에서 유일한 승강기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신산업 지대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전략적 클러스터화
-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기존 지식의 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생산성 제고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나. 면 적 : 320,728㎡ → 324,287㎡(증. 3,559㎡)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가. 개발기간
 - 지정 : 2009년 ~ 2016년 5월 9일
 - 변경 : 2009년 ~ 2016년 10월 31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없음)

- 가. 사업시행자 : (주)산양종합개발 대표이사 이인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목장용지	임	과수원	구거	전	답	기타	
필지수	기정	79	5	20	5	14	11	15	9
	변경	82	5	20	5	14	11	18	9
면적 (㎡)	기정	320,728	33,339	216,382	4,807	10,089	10,291	42,316	3,504
	변경	324,287	33,339	216,382	4,807	10,089	10,291	45,875	3,504
구성비(%)	100.0	10.3	66.7	1.5	3.1	3.2	14.1	1.1	

나. 소유자별 현황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 계	거창군	농림축산 식품부	기획재정부		
필지수	기정	79	79	64	14	1	-
	변경	82	15	-	14	1	67
면적 (㎡)	기정	320,728	320,728	310,014	10,089	625	-
	변경	324,287	10,714	-	10,089	625	313,573
구성비(%)		100.0	3.3	-	3.1	0.2	96.7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20,728	증)3,559	324,287	100.0	농공단지 경계부지 편입 민원반영
산업시설용지	192,221	-	192,221	59.3	
지원시설용지	5,297	증)3,760	9,057	2.8	
공공시설용지	123,210	감)201	123,009	37.9	
도로	62,400	-	62,400	19.2	
주차장	3,255	-	3,255	1.0	2개소(변경없음)
송전철탑	1,040	-	1,040	0.3	3개소(변경없음)
송전선로	(13,321)	-	(13,321)	(4.1)	중복결정(변경없음)
공원·녹지	45,522	감)201	45,321	14.0	
근린공원	12,835	-	12,835	4.0	
녹지	32,687	감)201	32,486	10.0	완충녹지 5개소, 경관녹지 5개소
저류지	10,993	-	10,993	3.4	2개소(변경없음)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없음)

○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3,164	62,400	2	1,460	34,866	4	1,166	20,100	2	538	7,434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8	3,164	62,400	2	1,460	34,866	4	1,166	20,100	2	538	7,434
소로	-	-	-	-	-	-	-	-	-	-	-	-
비고	가각전제, 가감속 차선, 버스베이 포함											

○ 도로계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2	20	주간선 도로	516	중1-51호선 (남상면 월평리 1544답)	남상면 월평리 산209구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1	50	22.5	보조 간선	944	중1-52호선 (남상면 월평리 1544답)	남상면 대산리 산65-3임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2	15	집산 도로	269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3임)	중2-43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3임)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3	15.5	집산 도로	450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1431답)	중1-52호선 (남상면 대산리 949-10도)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4	15.5	집산 도로	400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임)	중2-43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6목)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5	15	국지 도로	47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임)	남상면 대산리 1532구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3	12	집산 도로	401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임)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949전)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4	12	국지 도로	137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임)	남상면 대산리 949-5전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1432-2전 일원	1,661	-	1,66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산122임 일원	1,594	-	1,594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3)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1	공원	근린공원	남상면 대산리 산122임 일원	12,835	-	12,835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4)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949-20답 일원	2,478	-	2,478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16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산122-3임 일원	4,709	-	4,709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17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1393-4목 일원	8,072	감)201	7,87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1407-2답 일원	3,630	-	3,630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950과 일원	2,240	-	2,240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949-6답 일원	5,425	-	5,425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1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산122-9임 일원	2,034	-	2,034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2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949-16답 일원	2,891	-	2,89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949-8답 일원	536	-	536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949-17도 일원	672	-	67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5) 상수도계획(변경없음)

○ 용수량

구 분	용수수요량(m ³ /일)	비 고
합 계	1,444	계획용수량 : 1,444m ³ /일
공업용수	1,248	
생활용수	196	

6) 하수도계획(변경없음)

○ 오·폐수량

구 분	오·폐수량(m ³ /일)	비 고
합 계	924	계획오·폐수량 : 924m ³ /일
생활오수	158	
공업폐수	766	

7) 우수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우수지	저류시설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19임 일원	8,174	-	8,174	거창군 고시 제2011-60 호 (2011.08.19)	
기정	4	우수지	저류시설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8답 일원	2,819	-	2,819	거창군 고시 제2011-60 호 (2011.08.19)	

8) 전력공급계획(변경)

○ 전력량

구 분	전력소요예상량(MWh/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40,154	41,214	

○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임 일원	448	-	448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3.16)	
기정	3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0-2임 일원	286	-	286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3.16)	
기정	4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0임 일원	306	-	306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3.16)	

○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5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6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10도	거창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0.905	13,321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3.16)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자금조달 : 사업시행자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합 계		31,611	-	4,938	21,407	5,266	
소 계		31,611	-	4,938	21,407	5,266	
조사 설계비	조 사 비	248	-	19	-	229	
	설 계 비	505	-	-	390	115	
공 사 비		19,829	-	4,582	11,743	3,504	
보 상 비		8,504	-	15	8,489	-	
간접비	감 리 비	521	-	120	268	133	
	부 대 비	1,749	-	168	401	1,180	
	SPC관리 비	208	-	34	116	58	
	건설이자	47	-	-	-	47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붙임(변경)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유치업종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계	192,221	100.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132,446	68.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26,105	13.6	
전기장비 제조업(C28)	33,670	17.5	

1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가. 오·폐수 처리(연계처리) : 오·폐수 압송관로(D200mm, 700m)

나. 군계획시설(진입도로) 개설사업

○ 도로결정조서(진입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2	20	주간선도로	516	중1-51 남상면 월평리 1544답	남상면 월평리 1524-6입	일반도로	-	거창군 고시 제2011-60 호 (2011.08.19)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가. 거창군 무상귀속: 119,754㎡ (사업부지면적의 36.9%)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관리처분계획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사업대상지 총면적	320,728	324,287	100.0	100.0	-
거창군 무상귀속면적	119,955	119,754	37.4	36.9	-
공 공 시 설 용 지	119,955	119,754	37.4	36.9	-
도 로	62,400	62,400	19.5	19.2	거창군 무상귀속
송 전 철 탑	1,040	1,040	0.3	0.3	거창군 무상귀속
공 원	12,835	12,835	4.0	4.0	거창군 무상귀속
녹 지	32,687	32,486	10.2	10.0	거창군 무상귀속
유 수 지	10,993	10,993	3.4	3.4	거창군 무상귀속
용수공급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우수처리시설	1식	1식	-	-	거창군 무상귀속 (면적은 도로에 포함)

나. 실수요자 귀속: 200,773㎡(사업부지면적의 62.6%)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관리처분계획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사업대상지 총면적	320,728	324,287	100.0	100.0	-
실수요자 귀속면적	200,773	204,533	62.6	63.1	-
산 업 시 설 용 지	192,221	192,221	59.9	59.3	실수요자 귀속
지 원 시 설 용 지	5,297	9,057	1.7	2.8	실수요자 귀속
주 차 장	3,255	3,255	1.0	1.0	실수요자 귀속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주거 지역	소 계	4,872,592	-	4,872,592	0.6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4,955	-	1,464,955	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3,140,548	-	3,140,548	0.40	
	제3종일반주거지역	173,465	-	173,465	0.02	
	준주거지역	93,624	-	93,624	0.01	
상업 지역	소 계	347,740	-	347,740	0.04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0.04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1,267,345	-	1,267,345	0.16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238,903	-	1,238,903	0.15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0.01	
녹지 지역	소 계	25,418,787	-	25,418,787	3.16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생산녹지지역	7,713,291	-	7,713,291	0.96	
	자연녹지지역	16,050,736	-	16,050,736	1.99	
관리 지역	소 계	261,953,834	증) 3,559	261,957,393	32.57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171,843,404	-	171,843,404	21.37	
	생산관리지역	8,213,818	-	8,213,818	1.02	
	계획관리지역	81,896,612	증) 3,559	81,900,171	10.18	
농림지역	469,342,459	감) 3,559	469,338,900	58.37		
자연환경보전지역	40,942,125	-	40,942,125	5.09		
미지정	-	-	-	-		

※기정은 거창군 고시 제2014-136호(2014.12.04.)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구역내)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0,728	증)3,559	324,287	100.0		
관리 지역	소 계	320,728	증)3,559	324,287	100.0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320,728	증)3,559	324,287	100.0	•농림지역(3,559m ²)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구역내)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용적률 (%)	변경 사유
		기정	변경			
-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역	3,559	150	금회 편입되는 일부 농림지역에 대하여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개발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1	승강기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일원	320,728	증)3,559	324,287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m ²)			변경 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일원	320,728	증)3,559	324,287	거창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구성에 따른 민원사항(경계부 일부토지 편입)을 반영하여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8	3,164	62,400	2	1,460	34,866	4	1,166	20,100	2	538	7,434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8	3,164	62,400	2	1,460	34,866	4	1,166	20,100	2	538	7,434
소로	-	-	-	-	-	-	-	-	-	-	-	-
비고	가각전제, 가감속 차선, 버스베이 포함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2	20	주간선 도로	516	중1-51호선 (남상면 월평리 1544답)	남상면 월평리 산209구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1	50	22.5	보조 간선	944	중1-52호선 (남상면 월평리 1544답)	남상면 대산리 산65-3임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2	15	집산 도로	269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3임)	중2-43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3임)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3	15.5	집산 도로	450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1431답)	중1-52호선 (남상면 대산리 949-10도)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4	15.5	집산 도로	400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임)	중2-43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6목)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5	15	국지 도로	47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임)	남상면 대산리 1532구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3	12	집산 도로	401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임)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949전)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4	12	국지 도로	137	중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122임)	남상면 대산리 949-5전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1432-2전 일원	1,661	-	1,66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산122입 일원	1,594	-	1,594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나) 공간시설(변경)

○ 공 원

■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1	공원	근린공원	남상면 대산리 산122입 일원	12,835	-	12,835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 녹 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949-20답 일원	2,478	-	2,478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16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산122-3입 일원	4,709	-	4,709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17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1393-4목 일원	8,072	감)201	7,87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1407-2답 일원	3,630	-	3,630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950과 일원	2,240	-	2,240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949-6답 일원	5,425	-	5,425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1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산122-9입 일원	2,034	-	2,034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2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949-16답 일원	2,891	-	2,89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949-8답 일원	536	-	536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949-17도 일원	672	-	67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녹지	•경관녹지 면적 감소 (A=8,072m ² →7,871m ²)(감201m ²)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사업구역내 일부 편입부지(민원반영) 발생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녹지 면적 감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전기공급 설비 (송전철탑)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임 일원	448	-	448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기정	3	전기공급 설비 (송전철탑)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0-2임 일원	286	-	286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기정	4	전기공급 설비 (송전철탑)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0임 일원	306	-	306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5	전기공급 설비 (송전선로)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6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10도	거창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0.905	13,321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 우수지

■ 우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우수지	저류시설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19임 일원	8,174	-	8,174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4	우수지	저류시설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8답 일원	2,819	-	2,819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산업 시설 용지	계	192,221	-	-	획지내 필지 분할·합병 가능
	A1	25,725	1	7,481	
			2	7,509	
			3	6,495	
			4	4,240	
	A2	33,824	1	3,216	
			2	3,571	
			3	3,571	
			4	3,571	
			5	3,649	
			6	2,976	
			7	3,521	
			8	3,537	
			9	3,482	
			10	2,730	
	A3	22,936	1	5,219	
			2	5,149	
			3	5,011	
			4	4,310	
			5	3,247	
	A4	49,961	1	4,086	
			2	4,236	
			3	4,253	
			4	4,253	
			5	4,168	
			6	2,762	
			7	3,938	
			8	4,230	
			9	4,253	
			10	4,253	
			11	4,240	
			12	2,691	
			13	2,598	
	A5	10,539	1	4,648	
			2	5,891	
	A6	15,566	1	9,583	
			2	5,983	
	A7	7,346	1	3,670	
			2	3,676	
	A8	18,143	1	4,482	
			2	4,201	
3			4,730		
4			4,730		
A9	8,181	1	4,099		
		2	4,082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구 분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원 시설 용지	계	5,297	9,057	-	-	5,297	9,057	증)3,760m ²
	B1	2,368	2,368	1	1	816	816	획지내 필지 분할·합병 가능
				2	2	726	726	
				3	3	826	826	
	B2	2,929	6,689	1	1	1,395	1,395	
				2	2	962	962	
				3	3	572	1,664	
				-	4	-	2,668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B2	3	• 면적 변경 - 572m ² → 1,664m ² 증)1,092m ²	민원사항(인접한 일부 부지 농공단지 편입 요구) 수용에 따른 지원시설용지 획지계획 변경
-	B2	4	• 획지 추가 - 2,668m ²	민원사항(인접한 일부 부지 농공단지 편입 요구) 수용에 따른 지원시설용지 획지계획 변경

다)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주차장 용지	계	3,255	-	3,255	
	주1	1,661	-	1,661	
	주2	1,594	-	1,594	

라) 공원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공원용지	근	12,835	-	12,835	

마) 저류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저류 시설 용지	계	10,993	-	10,993	
	저류1	8,174	-	8,174	
	저류2	2,819	-	2,819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 결정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1 ~ A4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	A5, A6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	A7 ~ A9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기장비 제조업(C28)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B1, B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다) 주차장시설 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주1, 주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라.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	12,835.0	12,835.0	-	-	시설율:14.3% (법정40%이하)
기반시설	도로, 광장	1,435.8	1,435.8	-	-	
조경시설	사각파고라 외 1종	35.9	35.9	-	-	
휴양시설	평의자 외 1종	13.5	13.5	-	-	
운동시설	족구장 외 5종	325.0	325.0	-	-	
편익시설	전망휴게소	28.0	28.0	-	-	
녹지 및 기타	녹 지	10,996.8	10,996.8	-	-	녹지율:85.7% (법정60%이상)

2) 시설별 조서

■ 시설조서

시설 구분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2,835.0	12,835.0			
기반 시설	소 계		1,435.8	1,435.8			
	가	도로(소계)	915.3	915.3			
	가-1	다목적광장	328.0	328.0			
	가-2	진입광장	43.0	43.0			
	가-3	진입광장	87.5	87.5			
	가-4	휴게광장	62.0	62.0			
	조경 시설	소 계		35.9	35.9		
①		사각파고라	17.6	17.6			
②		장식벽	18.3	18.3			
휴양 시설	소 계		13.5	13.5			
	③	평 의 자	-	-			
	④	연식의자	13.5	13.5			
운동 시설	소 계		325.0	325.0			
	나	족구장	325.0	325.0			
	⑤	TM롤링웨이트	-	-			
	⑥	TM레그프레스	-	-			
	⑦	TM트윈바디실업	-	-			
	⑧	TM스트레칭로라	-	-			
	⑨	TM크로스컨트리	-	-			
편익 시설	소 계		28.0	28.0			
	다	전망휴게소	28.0	28.0			
녹지 및 기타	소 계		10,996.8	10,996.8			
		녹 지	10,996.8	10,996.8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301.0	915.3				
소 로	3	1	2.0	69.5	144.5	진입로	가-2 광장	가-1 광장	
소 로	3	2	4.0	152.0	620.0	진입로	가-3 광장	가-1 광장	
소 로	3	3	1.5	63.0	125.8	연결로	소로 3-2	가-4 광장	
소 로	3	4	1.5	16.5	25.0	연결로	가-4 광장	경계부	

15.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서(변경없음)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거창군청 승강기경제과(055-940-3362)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연 번	기 정						변 경					
	행정구역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행정구역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본번	부번					본번	부번			
					320,728						324,287	
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전	820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전	820	산양종합개발
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50		과	2,614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50		과	2,614	산양종합개발
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3	4	목	2,462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3	4	목	2,462	산양종합개발
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3	3	답	834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3	3	답	834	산양종합개발
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07	2	답	300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07	2	답	300	산양종합개발
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08	1	전	19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08	1	전	19	산양종합개발
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09		전	876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09		전	876	산양종합개발
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10		답	1,468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10		답	1,468	산양종합개발
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12	1	답	5,016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12	1	답	5,016	산양종합개발
1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23		도	625	기획재정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23		도	625	기획재정부
1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29		답	2,291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29		답	2,291	산양종합개발
1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0		답	1,752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0		답	1,752	산양종합개발
1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1		답	1,626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1		답	1,626	산양종합개발
1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1	전	619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1	전	619	산양종합개발
1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2	전	1,545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2	전	1,545	산양종합개발
1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4	창	130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4	창	130	산양종합개발
1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5	임	128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5	임	128	산양종합개발
1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9	임	29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9	임	29	산양종합개발
1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10	전	1,929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10	전	1,929	산양종합개발
2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11	과	358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11	과	358	산양종합개발
2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목	1,253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목	1,253	산양종합개발
2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01	28	구	1,177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01	28	구	1,177	농림축산식품부
2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01	29	구	811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01	29	구	811	농림축산식품부
2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01	30	구	482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01	30	구	482	농림축산식품부
2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17	1	구	1,587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17	1	구	1,587	농림축산식품부
2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32		구	364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32		구	364	농림축산식품부
2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65	2	임	198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65	2	임	198	산양종합개발
2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18	1	임	132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18	1	임	132	산양종합개발
2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19		임	8,529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19		임	8,529	산양종합개발
3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0	2	임	198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0	2	임	198	산양종합개발
3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1		임	1,289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1		임	1,289	산양종합개발
3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임	152,686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임	152,686	산양종합개발
3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3		임	298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3		임	298	산양종합개발
3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4		임	298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4		임	298	산양종합개발
3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31	2	임	126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31	2	임	126	산양종합개발

연 번	기 정						변 경					
	행정구역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행정구역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본번	부번					본번	부번			
3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32	2	임	16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32	2	임	16	신양종합개발
3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59		구	157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59		구	157	농림축산식품부
3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1		구	158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1		구	158	농림축산식품부
3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2		구	262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2		구	262	농림축산식품부
4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3		구	101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3		구	101	농림축산식품부
4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4	1	구	64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4	1	구	64	농림축산식품부
4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5	1	구	270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5	1	구	270	농림축산식품부
4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6		구	511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6		구	511	농림축산식품부
4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380	2	전	868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	전	868	신양종합개발
4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380	4	전	679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3	전	679	신양종합개발
4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380	5	전	1,693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4	전	1,693	신양종합개발
4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380	11	전	208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5	전	208	신양종합개발
4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380		답	71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	답	71	신양종합개발
4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382	1	답	3,341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6	답	3,341	신양종합개발
5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18		답	5,280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7	답	5,280	신양종합개발
5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18	2	답	10,725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8	답	10,725	신양종합개발
5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0	1	도	260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9	도	260	신양종합개발
5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0	2	도	1,346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0	도	1,346	신양종합개발
5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6	1	답	2,119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1	답	2,119	신양종합개발
5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7	1	과	493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3	과	493	신양종합개발
5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7	2	과	499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4	과	499	신양종합개발
5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7	3	과	843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5	과	843	신양종합개발
5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7		전	1,035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2	전	1,035	신양종합개발
5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8	1	답	1,229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6	답	1,229	신양종합개발
6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32	2	도	438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7	17	도	438	신양종합개발
6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32	3	도	41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8	도	41	신양종합개발
6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39	1	목	813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9	목	813	신양종합개발
6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39	4	목	1,103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0	목	1,103	신양종합개발
6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40		답	3,064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1	답	3,064	신양종합개발
6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40	2	답	3,200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2	답	3,200	신양종합개발
6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45	3	도	50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4	도	50	신양종합개발
6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45	4	도	124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5	도	124	신양종합개발
6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45	2	도	490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3	도	490	신양종합개발
6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01	3	구	4,118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6	구	4,118	농림축산식품부
7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01	5	구	27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7	구	27	농림축산식품부
7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49	4	임	41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2	임	41	신양종합개발
7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49	3	임	16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1	임	16	신양종합개발

연 번	기 정						변 경					
	행정구역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행정구역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본번	부번					본번	부번			
7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80		임	44,031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산122	3	임	44,031	신양종합개발
7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85	2	임	198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산122	4	임	198	신양종합개발
7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93	7	임	631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산122	5	임	631	신양종합개발
7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93	8	목	27,708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산122	6	목	27,708	신양종합개발
7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93	9	임	129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산122	7	임	129	신양종합개발
7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94		임	397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산122	8	임	397	신양종합개발
7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202		임	7,012	거창군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산122	9	임	7,012	신양종합개발
80	-	-	-	-	-	-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1393	2	답	1,221	조경제
81	-	-	-	-	-	-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1394	1	답	1,008	조경제
82	-	-	-	-	-	-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1394	2	답	1,330	조경제

○ 지장물(변경없음)

거창군계획시설(도로:소로3-95호선 외 1개 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77-256호(1977.4.25)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95호선 외 1개 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6. 5. 4.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교통 시설 (도로)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95호선) 개설공사	거창	송정	소로	3	95	59	6	375	거창읍 송정리 30-5	거창읍 송정리 52-1	경고256호 (‘77.4.25) 경고	
	대동리 S-oil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2-5호선) 개설공사	거창	대동	소로	2	5	99	8	824	거창읍 대동리 668-23	거창읍 대동리 656-6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송정리 도시계획도로(소로3-95호선) 개설공사 : 2017.12.31
 - 대동리 S-oil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2-5호선) 개설공사 : 2016.12.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송정리 도시계획도로(소로3-95호선)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104	375					
1	거창읍 송정리	60-10	도	3	3		거창군			
2	"	30-5	대	251	158		거창군			
3	"	1055-1	도	6,325	107		국(건설부)			
4	"	30-3	대	93	30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1길40, 가동 101호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553	김홍연 김정희			
6	"	52-2	대	89	46	거창군 거창읍 동동4길11, 109동405호 (주공아파트)	이다경			
7	"	52-1	대	36	18		추태순			
8	"	53-1	대	307	13		윤병태			

○ 대동리 S-oil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2-5호선)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196	824					
1	거창읍 대동리	668-23	답	177	177	-	거창군			
2	"	666-8	잡	494	494	-	거창군			
3	"	668-21	대	5	5	-	거창군			
6	"	656-6	도	492	120	-	거창군			
5	"	665-4	전	10	10	-	거창군			
4	"	666-5	도	18	18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46-7	정일중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다른 시·군과 동일한 지원책으로는 승강기 산업체의 투자유치가 어려우므로, 차별화된 특별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 거창승강기밸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승강기산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2조)
- 거창승강기밸리 입주기업(승강기산업체)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7조~제11조)
 - 거창승강기밸리 입주 승강기관련기업에게는 입지보조금 추가지원(안 제7조)
 - 환경위해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거창승강기밸리 공동브랜드 홍보 보상금 지원(안 제10조)
- 거창승강기밸리내 생산품의 유통 물류비 및 수출포장비 지원
(안 제11조)
- 보조금 지원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의 명확화(안 제15조, 제16조)

3.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승강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소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승강기경제과
- 전화 : 055-940-3703, 팩스 : 055-940-3349, 이메일 : fionara@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붙임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거창군 조례(규칙) 제 호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증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제62조”를 “제69조”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제2조제15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가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0조의 2, 제20조의 3의 지원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입지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기오염·폐수·소음·진동 등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거창승강기밸리 공동브랜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밸리내에서 생산된 거창승강기 공동브랜드를 부착한 제품에 대하여 홍보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물류비 지원)

- ① 군수는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거창승강기밸리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 물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포장비의 일부를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하여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보조금 정산 완료통보를 통보한 날부터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후단의 “다만, 제4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후단에 신설한다.

제16조제2항제5~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가동하지 않은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정산완료 통보 후 7년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를 처분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 이상을 3년 동안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조례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 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 9. (생략)</p> <p>10.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p> <p>11. ~ 12. (생략)</p> <p>13. (생략)</p> <p>가. ~ 나. (생략)</p> <p>다.-----제62조-----</p> <p>-----</p> <p>-----</p> <p>라. <신설></p> <p>14. (생략)</p> <p>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에 따른다.</p> <p>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p> <p>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가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증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p> <p>11. ~ 12.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제69조-----</p> <p>-----</p> <p>-----</p> <p>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14. (현행과 같음)</p> <p>15. <삭제></p> <p>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p> <p>① <u>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가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0조의 2, 제20조의 3의 지원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제15조(투자 이행담보 및 사후관리)
 ① ~ ② (생략)
 ③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생략)
 ② -----
 -----다만, 제4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1 ~ 3. (생략)
 4. -----

-----<단서 신설>

-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6. -----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를 7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 7. 공장 등의 이전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년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히 축소하는 경우
- 8. 사업계획서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 이상을 3년 동안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15조(투자 이행담보 및 사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순위 저당권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보조금 정산 완료통보를 통보한 날부터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4. -----

-----다만, 제4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가동하지 않은 경우
- 6. ----- 보조금 정산완료 통보 후 7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를 처분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 7. <삭제>
- 8.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 이상을 3년 동안 유지하지

<p>③ <신설></p> <p>④ <기존③항을 ④항으로 함></p>	<p><u>못할 경우</u></p> <p>③ 조례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	--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10.4.12] [[시행일 2010.7.13]]
3. 삭제[2010.4.12] [[시행일 2010.7.13]]
4. 삭제[2010.4.12] [[시행일 2010.7.13]]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 제26조(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③ 삭제 [1999.2.8]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⑤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시·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게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 시 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에 대한 컨설팅·마케팅·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연수사업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경남(거창지구)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경남 거창군 일원에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구, 가야문화권 특정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사항이 있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고하오니,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2)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5. 02.

거 창 군 수

1. 계획개요

- 가. 명 칭 : 경남(거창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
(구, 가야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 나. 대상지역 : 거창군 일원 118.3km²
- 다. 계획기간 : 2011년 ~ 2019년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 창 군 수
- 마. 사업계획

구 분	사 업 명	비 고
역사·문화 자원 복원 및 개발·정비 사업	거열산성 복원사업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	금원산자연휴양림진입도로	
	거열산성 진입도로개설사업	변경
	금귀산봉화대 연결도로 정비사업	

2.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 사업명 : 거열산성 진입도로개설사업			
위 치	거창읍 상림리, 가지리, 대동리, 대평리 일원	거창읍 상림리, 가지리, 대동리, 대평리 일원	
사업량	도로개설 L=4.0km, B=12m	도로개설 L=4.4km, B=20m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6. 5. 2 ~ 2016. 5. 16

나.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2)

4. 기타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제31조의2에 따라 거창군 일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3.

거창군수

1. 공 고 명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
2. 위 치 : 거창군 일원
3. 목 적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4. 근 거 : 농지법 제31조의2 및 농지법시행령 제28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1755(2016. 4. 18.)호
5. 요청내역
 - 변경 : 농업진흥구역 289,8ha → 농업보호구역 289.8ha
 - 해제 : 농업진흥구역 338.0ha, 농업보호구역 855.8ha
→ 농업진흥지역밖 1,193.8ha
6.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 장소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 열람·공고 기간 : 2016. 5. 4. ~ 2016. 5. 18(15일간)
8.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제출
 -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 현재 주민공람 중인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도면 및 조서의 내용 중 향후 금번 변경 및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변경 및 해제 고시대상에서 제외됨

2016년 4월중 거창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고

2016년 4월중 우리군 거창, 가조, 위천, 웅양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정수 수질검사

검 사 항 목		수질기준	정수장별 수질검사결과				
			거창	가조	위천	웅양	
미 생 물	일반세균	100CFU/ml 이하	0	0	0	0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 강 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소(F)	1.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세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3.1	1.6	0.4	2.1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보론(B)	1.0 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 강 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페놀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다이아지논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파라티온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페니트로티온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카바틸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1-트리클로로에탄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디클로로메탄		0.02mg/l이하	0.002	0.001	0.001	0.001	
벤젠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톨루엔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에틸벤젠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크실렌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디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사염화탄소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 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다이옥산	0.050 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검사항목		수질기준	정수장별 수질검사결과			
			거창	가조	위천	옹양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유리잔류염소	4.0 mg/l이하	0.40	0.40	0.50	0.30
	총트리할로메탄	0.1 mg/l이하	0.020	0.027	0.049	0.022
	클로로포름	0.08 mg/l이하	0.012	0.020	0.042	0.014
	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3 mg/l이하	0.007	0.007	0.007	0.008
	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 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 mg/l이하	0.0036	0.0053	0.0108	0.0066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 mg/l이하	0.0019	0.0018	0.0017	0.0015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 mg/l이하	0.0029	0.0033	0.0039	0.0033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 mg/l이하	0.00024	0.00024	불검출	불검출
	할로아세틱에시드	0.1 mg/l이하	0.012	0.018	0.040	0.020
	포름알데히드	0.50 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심 미 적 영향물질	경도	300 mg/l이하	77	66	65	110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mg/l이하	2.7	2.4	3.4	3.0
	냄새	무 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맛	무 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동(Cu)	1 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색도	5도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세제(ABS)	0.5 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수소이온농도(pH)	5.8 - 8.5	7.0	7.1	7.0	7.4
	아연(Zn)	3 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2
	염소이온(Cl ⁻)	250 mg/l이하	16.7	9.6	3.2	16.8
	증발잔류물	500 mg/l이하	110	58	14	134
	철(Fe)	0.3 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망간(Mn)	0.05 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탁도	0.5NTU 이하	0.07	0.14	0.12	0.10
	황산이온(SO ₄ ⁻²)	200 mg/l 이하	9	5	11	12
알루미늄(Al)	0.2 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수도꼭지 수질검사

정수장명	시료채수장소	검 사 결 과			
		일반세균 (100cfu/ml 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유리잔류염소 (4.0mg/l이하)
거 창	거창읍 하동4길 39	0	불검출	불검출	0.37
	거창읍 거열로 195	0	불검출	불검출	0.32
	거창읍 중앙로 170	0	불검출	불검출	0.30
	거창읍 강남로 70	0	불검출	불검출	0.28
	거창읍 아림2길 83-1	0	불검출	불검출	0.31
	남상면 밤티재로 1195	0	불검출	불검출	0.17
	거창읍 수남로 2201	0	불검출	불검출	0.26
	거창읍 거열로4길 235	0	불검출	불검출	0.19
	거창읍 공수들1길 41	0	불검출	불검출	0.37
가 조	가조면 지산로 1478	0	불검출	불검출	0.32
	가조면 가조가야로 1093	0	불검출	불검출	0.38
위 천	위천면 원학길 391	0	불검출	불검출	0.31
옹 양	옹양면 옹양로 1425	0	불검출	불검출	0.28

※ 위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해당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급수지역의 대표지점 결과입니다.

3.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정수장별		거 장	가 조
구 분			
수도꼭지 채수위치		거창읍 하동4길 39	가조면 가조가야로 1093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일반세균	100/ml이하	불검출	불검출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3.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4. 암모니아성 질소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5. 동	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6. 아연	3mg/l이하	0.080	0.006
7. 철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8. 망간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9. 염소이온	250mg/l이하	13.2	8.1
10. 유리잔류염소	4.0mg/l이하	0.37	0.38

※ 위 수도관 수질검사는 해당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급수지역의 대표지점 결과입니다.

4. 검토 및 판정

□ 위 검사결과 우리군 4개 정수장에서 생산·공급하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는 먹는물 수질기준 58개 항목에 적합하므로 안심하고 음용하셔도 됩니다.

(수질검사기관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측정검사센터,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5. 정수장별 급수구역

정수장별	거 장	가 조	위 천	응 양
구분				
급수구역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 김천리, 송정리, 대평리, 운정, 정장, 국농소, 노혜, 김용, 교촌, 중촌, 동산, 절부, 양평, 마동, 새동네, 들성, 장팔, 모곡, 사마, 동변, 개화, 성산, 셋담, 남상면월평	마상리(전마을), 장기, 월포, 방촌, 역촌, 부산, 상촌, 가조, 온천지구, 석강농공단지	장기, 창촌, 후방, 상천, 서원, 강남, 덕거, 면동, 마항, 강동, 사마, 거차, 남산, 금곡, 황산, 수승대	강천, 노현, 화동, 원촌, 상도평, 동호, 원성기, 정동, 송정, 도평
정수장 관리자	강종찬, 이석형, 표주태, 이창호, 조동성, 강정일			
정수장 연락처	940-8680			

□ 정수장 관리책임자 :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화 승 호

□ 수질문의 :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중, 담당자 강경구 ☎ 055-940-8680, 8699, 국번없이 121】

6. 당부사항

수돗물 절약 및 수질관리 등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나 야채를 씻을 때, 세면 또는 양치시에는 물을 받아 사용하고 빨래는 모아서 세탁하는 등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상수도관의 수돗물 누수를 조기에 찾아 보수하기 위해 누수신고 포상금 (거창시장사랑 상품권 3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목격한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940-84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나 옥내수도관의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박테리아, 조류, 이물질 퇴적, 관 부식 등으로 인해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어도 수질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기적(6개월 1회이상)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수돗물은 병원성미생물(장티푸스, 바이러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염소 소독을 하고 있으며 소독으로 인해 소독약품(염소)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을 받은 후 20~30분간 깨끗한 곳에 놓아두면 염소 냄새가 없어지고 공기중의 산소가 녹아들어 청량감이 좋아지게 됩니다.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보관할 시에는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하고 청결한 곳에 보관하고 미생물의 증식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음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물맛은 체온과 비슷할 때 가장 맛이 없고 물의 온도를 4~14℃ 정도로 유지하면 용존산소량 증가와 청량감도 있어 보다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3일

거 창 군 수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